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및 대응방안

2020. 7.

2020.04 산업안전보건공단 국내 재해 사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주)0000에서 재해자가 로봇 용접기에 부착된 용접 팁 교체 작업 중 작동 중인 **로봇 팔과 지그 사이에 흉부가 끼어 사망**

*용접 팁: 용접 스폿 공구의 끝부분으로 저항용접의 소모성 전극

*지그: 용접을 위하여 피용접체를 정확하게 고정하거나 구속하는 장치

2020.04 산업안전보건공단 국내 재해 사례

<스폿용접용 로봇>



<용접 팁 교체>



재해 발생 원인

1. 로봇 가동 반경 내 출입 시 방호장치 미작동

- 로봇 가동 반경 내 출입 시 감응식 방호장치 작동에 따라 로봇의 작동이 중지되어야 하나 일시중지 기능 사용으로 방호장치 미작동

2. 로봇 작동 중인 셀 안으로 출입 시 로봇 운전정지 미실시

1. 산업용로봇 산업안전 관련 정책방향

1. 안전검사의무화

● 2018 • 2019년 안전검사 의무화

부산고용노동청,

컨베이어 · 산업용로봇 보유사업장 불시안전검사 실시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안전검사대상 유해 · 위험기계시설로서

안전검사대상 기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했다.

최초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사용중지 명령을 유예한다.

- “이번 조사를 통해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보유사업장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표”(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9.1.26.)

1. 안전검사의무화

● 2019 고용노동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6에 따라
2017.10.28.까지 설치된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2018.12.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2018.12.31. 이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최초 검사 시기를 연장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2019.2.28),

△50인 미만~10인 이상 (~2019.5.31.),


△10인 미만 (~2019.8.30)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접수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서 안내 중

2. 끼임 위험 사업장 개선 조치

● 2020 고용노동부 공문 (2020.06.24.)

"주 최대 20시간 시행, 우리는 바로사회에서 활동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고용노동부

수신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제조업)
(경유)

제목 제조업 끼임 위험 사업장 자율 점검 및 개선 조치 실시 안내

1. 관련: 제조업 끼임 위험 사업장 감독 안내(산재예방지도과-5414, 2020.05.29.)

2. 귀 사업장에 발송한 위 공문과 관련하여 우리 지청에서는 컨베이어, 크레인 등 위험 기계로 부리 근로자의 끼임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권내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제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감독 기간: 2020.06.24.(수) - 08.31.(화). (자율개선 기간 이후)

나. 감독 대상: 끼임사고 다발 10대 위험기계·기구 보유사업장*

* 컨베이어, 크레인, 저게차, 승강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분쇄·피쇄기, 식품살포, 사출기, 프레스

다. 감독내용: 기계·기구의 안전검사·인증, 기계·기구에 대한 끼임 위험 방지조치, 비정형 작업 시 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절차 숙지 여부 등

※ 감독 중 위반사항 적발 시 행·사법처리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감독 전 사업장 자율개선을 유도(06.24. - 07.08.) 하고자 하오니 불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자율 점검 및 개선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자료 홈페이지 게시(www.noel.go.kr/incheonbukbu)

붙임: 제조업 끼임 위험 사업장 자율점검표 1부. 끝.

2. 끼임 위험 사업장 개선 조치

● 2020 고용노동부 공문 (2020.06.24.)

제조업 끼임 위험 사업장 자율 점검 및 개선 조치 실시 안내

2. 귀 사업장에 발송한 위 공문과 관련하여 우리 지청에서는 컨베이어, 크레인 등 위험기계로부터 근로자의 끼임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제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감독기간 : 2020.06.24. ~ 08.31.

나. 감독대상 : 끼임사고 다발 10대 위험기계 • 기구 보유 사업장
※ 컨베이어, 크레인, 지게차, 승강기, 산업용로봇, 사출기, 프레스 ...

다. 감독내용 : 기계 • 기구의 안전검사 • 인증,
기계 • 기구에 대한 끼임 위험 방지조치
비정형 작업 시 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절차 숙지 여부 등

※ 감독 중 위반사항 적발 시 행 • 사법처리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산업재해 감축 목표

●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 절반 감축 목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집중 추진

○ 중점 추진과제 1 : 주체별 역할, 책임 명확화 및 실천

○ 중점 추진과제 2 : 고 위험 분야 집중 관리

○ 중점 추진과제 3 : 현장 관리, 감독 시스템 체계화

- 감독 시 투입인원과 시간을 늘려 법 위반 사항 적발

- 기술적 요인 점검과 함께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지도

- 감독 인력 활용 위험 요인 사전교육,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이행상황 불시점검

○ 중점 추진과제 4 :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및 책임

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 안전검사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175조 제4항)

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 안전검사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175조 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안전검사기관은 제9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

● 작업의 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이하 "기계·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제53조 제1항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69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53조 제3항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68조)

2.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

● 작업의 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영업정지)

● 작업중지 명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그 밖의 제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4. 작업 중지 명령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에 답답한 기업-정부 작업중지 명령 남발, 생산차질 불 보듯 (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2017년 말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중공업, 철강 등 주요 기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작업중지 기간이 21일
피해금액은 600억 ~ 1200억원 달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근로자 사망 사고 당시 정부 작업중지 명령 (8일)으로 회사 측은 1260억 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4. 작업 중지 명령 사례

● 인천 송도 크레인 전도사고 공사 현장 작업중지명령 (2020.1.3. 뉴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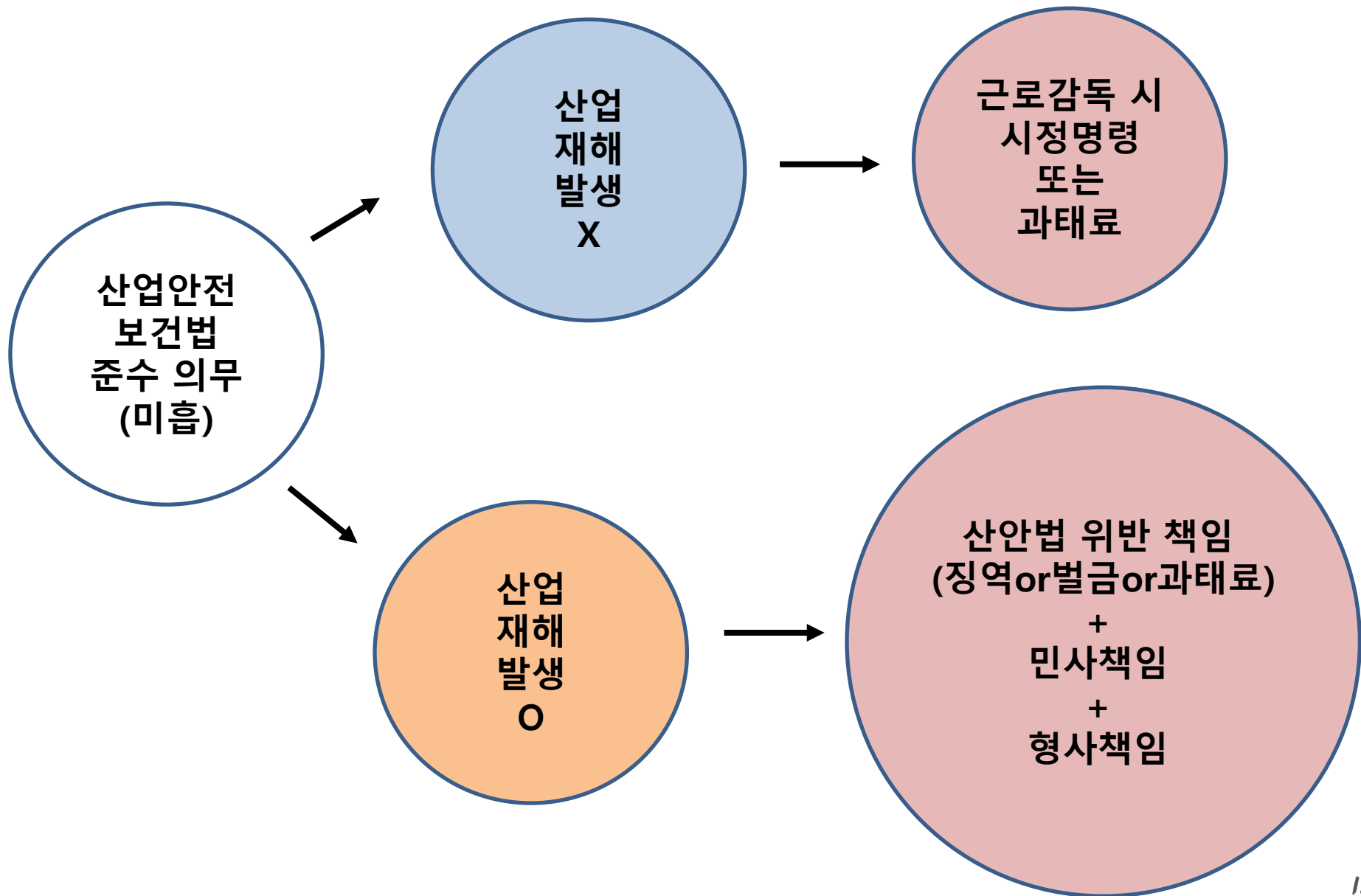
3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송도 크레인 전도 사고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3일 "송도 크레인 전도사고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고 현장에는 노동청 감독관이 투입돼 안전 관리 소홀 및 과실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다.



5.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5.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1. 행정적인 책임

1) 사고 발생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70조)**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75조 제3항)**

5.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1. 행정적인 책임

2) 근로감독의 실시

- 산업재해의 원인분석
- 노동관계 법령상 법률 위반 여부 감독

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인상

-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개별 요율 적용 대상이라면,
-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 최대 20%까지 인상 또는 인하 될 수 있음.

5.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 2019.2.14. 한화대전공장 폭발사망사고로 실시된 근로감독 결과

한화대전공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2건

작업자 위험 시설 방치, 압력 용기 검사하지 않음, 안전보건 교육 미흡

작업환경 측정 유해인자 누락, 특수 건강검진 일부 미 실시

- 위반사안 53건 검찰 송치, 1억 2605만원 과태료 부과 방침 (노동청)
- 한화대전공장 로켓 추진체 작업장 폭발사고 발생에 따른 감독

● 포스코 광양제철소 안전보건관리 실태 부실 등 221건 사법처리

유해위험 시설 위반 사항 적발, 작업환경 측정 누락

전기 충전부 노출 및 미접지, 밀폐공간 관리 누락 등

- 위반사항 221건 사법처리, 1억 2,100만원 과태료 부과 (노동청)
- 포스코 본사 직영 '포스넵 공장' 사망사고 관련 집중 감독 실시

5.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2. 민사 책임

1)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2. 민사 책임

● 대법원 판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5.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2. 민사 책임

수원지방법원 (2015나46116 판결 사건)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제품이 이송캐리어와 랙(Rack) 사이에 걸려 감지센서에 접근하고 있던 다른 이송캐리어로 이동하지 않게 되자 필요한 조치를 취하던 중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센서의 오작동으로 이송캐리어와 이동대차 사이에 가슴 부위가 협착되어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 인지기능 장애, 실어증, 보행 및 언어 장애, 상지기능 자해가 발생하였고, 호전 가능성이 없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동작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5.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2. 민사 책임

수원지방법원 (2015나46116 판결 사건)

회사는

- ① 정기적으로 월2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함
- ② 회사 내 안전보건관리 규정에는
 - 1) 기계 운전 정지 후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 2) 오작동 발생 시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감독자에게 보고 후 조치한다.
 - 3) 기계설비의 오작동 등에 대한 조치는 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5.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2. 민사 책임

수원지방법원 (2015나46116 판결 사건)

근로자는

- ① 사고 당시 개인적 용무를 위하여 작업현장에서 일시 이탈함
- ② 라인의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오작동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도 아니한 채 기계설비에 접근하여 이를 작동시키려고 하였던 점,
- ③ 회사의 안전관리규정 내지 안전작업 기준 등에 따라 라인에 오동작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기계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동작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5.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2. 민사 책임

수원지방법원 (2015나46116 판결 사건)

근로자의 과실부분을 30%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 3억 2천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함

5.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3. 형사 책임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첫 재판서 공장 관계자들 혐의 인정

A 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5.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 오징어잡이 외국인근로자사망사건 (중앙일보 19.09.26.)

회사 직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경북 영덕의 오징어가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영덕경찰서는 영덕군 축산면에서 오징어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54)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업체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은 지난 10일 지하 폐기물 탱크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뒤 숨졌다.

이 탱크는 오징어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오징어 부산물에서는 암모니아 가스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작업 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산소·유해 가스 농도 측정과 내부 환기를 하지 않고, 노동자 4명에게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 (사업장 준수 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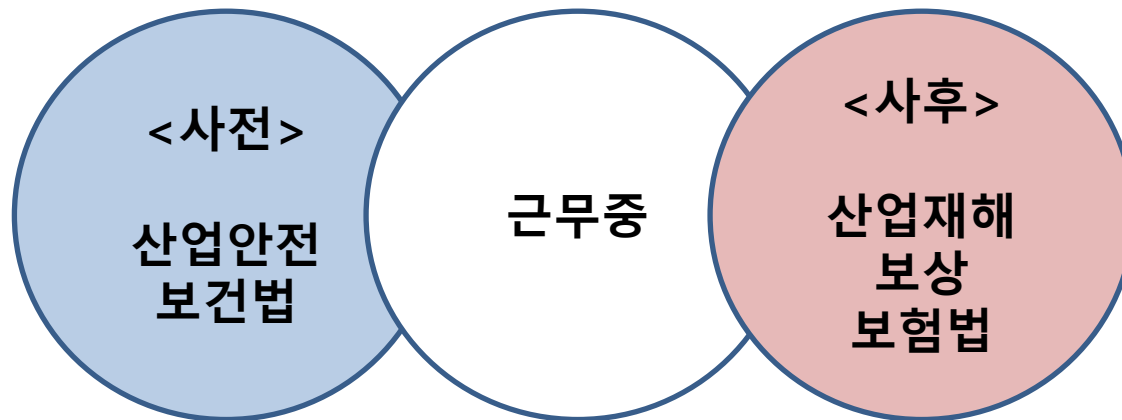
**근로자의 생명보호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확보를 위한 법률**

〈준수 해야 할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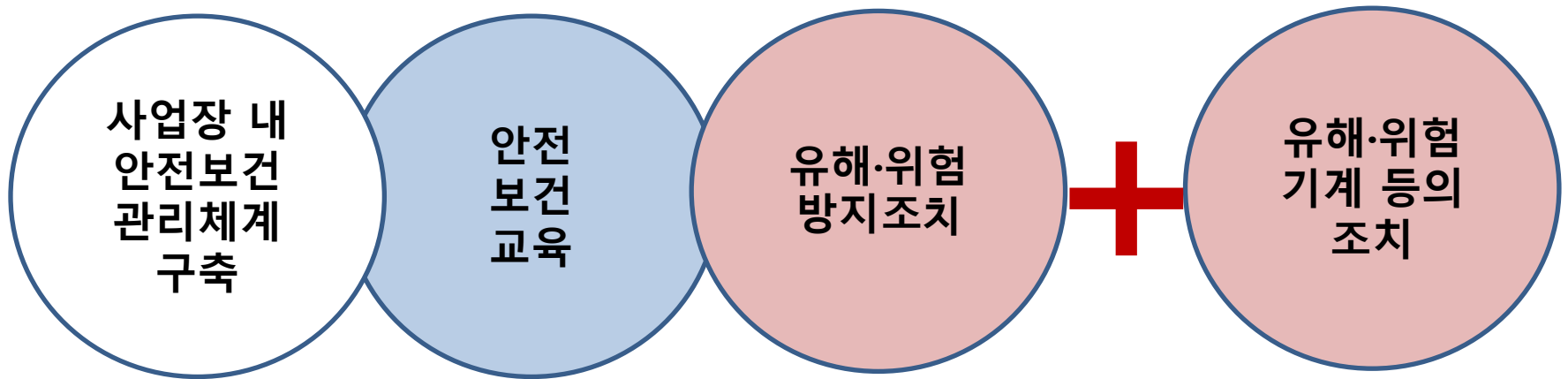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2.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 1 최저 기준
- 2 전문·기술성
- 3 자율적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3.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 1)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3) 관리감독자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4)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5)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6) 안전보건관리규정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4. 안전보건교육

- 1) 정기교육 (매분기 3시간 ~ 6시간)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2)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3)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로봇작업” 특별교육 대상임**)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5. 유해 · 위험 방지조치

- 1) 법령 등 요지 게시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2) **위험성 평가 : 근로자의 참여 보장**
- 3)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4)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취할 것)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으로 **근로자사망에 이르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위의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0.5배 가중**

6.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한 자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2) 안전검사의무

- 일정 기간 검사를 받아 기계 등 안전 성능 유지 확인
- 일정한 규격, 방호장치 안전기준 갖추지 않으면 양도, 설치 금지
- 안전검사 받지 않거나 불합격 시 대상기계 사용금지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6.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안전검사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175조 제4항)

6.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안전검사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175조 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안전검사기관은 제9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1. 법 제93조제1항 전단을 위반 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대당)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200	600	1,000
2. 법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1대당)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	250	500
3.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대당)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3. 대응방향

1. 위험성평가(안전컨설팅)의 실시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한다는 의미로서
위험한 것을 미리 찾아내어 사전에 어느 정도 위험한지 평가하고 그 평가 크기에 따라 예방대책을 세워두는 것을 말한다.

-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전체로 실시할 수도 있지만,
- 기계·기구, 설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2. 위험성평가의 내용

1. 유해위험요인 파악
2. 위험성 추정 및 결정
3. 위험성 감소조치 수립
4. 위험성 감소조치 이행
5. 기록 및 검토·수정

※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외부기관을 통한 위험성평가컨설팅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법적효력

○ 안전보건관리체제 관계규정 위반으로 처벌 방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직무 내용 중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교육 의무 준수

1)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 기계·기구의 위험성

4. 위험성평가 법적효력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 벌칙 및 과태료 완화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고의범만 처벌 대상이 됨
- 산안법 위반 수사실무상 작업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던 중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정된 작업이 아니었거나 근로자가 이례적·돌발적인 방법으로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5. 위험성평가 법적효력

○ 대법원 판례 (2008.8.11. 선고 2007도798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 → 행위자로서 책임발생 인정됨

6.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 지원

○ 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

(상시 50명 미만, 산재보험료 체납X)

1) 접수기간 : 금년도 재원소진시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http://clean.kosha.or.kr>)

오프라인 : 관내 안전보건공단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3) 지원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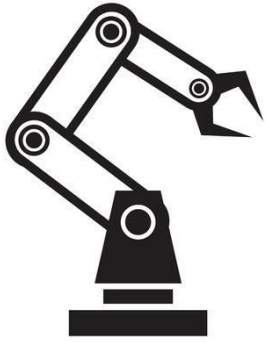
산업용로봇 방호장치

(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가동허가장치)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장치

※ 안전검사 불합격 사항을 개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예방 장치 및 설비 추가 지원가능



감사합니다.

Robot System Safety

